

프랑스 소비자파산절차와 부채소거제도(면책제도)¹⁾ 고찰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국가송무과

I. 서

프랑스는 1989년 12월 31일 “개인의 채무초과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 (Neiertz법)을 제정²⁾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호의적인 협상(Négociation amiable)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을 구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 법은 ‘채무초과절차(procédure de surendettement)’를 통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성실한(bonne foi) 채무자에게 자신의 채무초과상황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로 인해 개인의 수입은 악

화되고, ‘리볼빙(회전대출)’과 같은 대출제도의 발전으로 신용의 획득이 용이해지고, 또한 무수한 광고 속에서 그들의 상환능력을 넘어서 소비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부채는 날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법개정이 있었지만, 오늘날 이러한 수많은 개인채무초과자들의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는 비효율적인 면이 드러나게 되었고, 당시 170,000 채무초과자들에게 제2의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Borloo’ 법(loin° 2003-710)은 알자스-모젤(Alsace-Moselle)지역에서 시행되던 ‘민사파산(faillite civile)제도’에서 영감을 얻어 ‘개인회복절차(rétablissement-



- 1) 혼동을 피하기 위해, ‘면책제도’라는 표현 대신, 프랑스법에 쓰여진 원어표현 그대로를 살려 ‘부채소거제도’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개념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 2) 프랑스는 이때까지, 1870년 전쟁 이후 독일에 합병되었을 당시 들여온 민사파산제도를 유지, 시행하고 있던 알자스-모젤(Alsace-Moselle)지역을 제외하고는, 개인(사인)에 대해서는 상인이나 장인에게 적용되던 법적 청산이나 파산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갖지 못했다.

ment personnel)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파산절차를 새로이 정비하였다.³⁾

소비자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소비법 법률 제 330-1조에서 제333-8조와 시행령 제331-1조 이하에 규정⁴⁾되어 있고, 이는 크게 두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하나는 '단순채무초과(surendettement simple)' 상태와 관련한 '채무초과절차(procedure de surendettement)' 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불능상태(irremédiablement compromises)'에 이른 경우 적용되는 '개인회복절차(rétablissement personnel)'와 관련한 것이다.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상의 면책제도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부채의 소거'인데, 이는 소비법 제331-7-1조가 규율하고 있는 '부채일부소거'와 동법 제332-9조가 규율하고 있는 '부채전부소거'로 나뉘고, 위의 두 절차와 각각 관련되어 있다. 채권자에게 그들의 채무회수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조치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부채소거는 일정한 조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프랑스법상의 각각의 소비자파산절차를 개관하면서 그 절차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채의 소거제도의 요건과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II. 소비자파산절차 개관

프랑스의 소비자파산절차는 간략하게 채무자의 서류신청 → 채무초과조정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수리가능성 판단 → 수리가능한 경우 호의적인 합의단계로서 변제조정계획안 작성 →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의시 절차의 종료, 동의가 없으면(변제조정계획안 실패) 다음 단계인 위원회의 '권고절차', 특별히 채무자가 지불불능상태인 경우에는 '부채일부소거'의 권고절차 진행 → 이후 위원회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회복불능상태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채전부소거'로 이어질 수 있는 집행판사 관할의 '개인회복절차'를 개시한다.

각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모든 절차에 공통되는 채무자파산신청의 수리가능조건부터 언급하기로 한다.

1. 소비자파산절차 수리가능조건

소비법 제330-1조는 '자연인의 채무초과상태라 함은 선의(bonne foi)의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그리고 도래할 모든 비직업적인 부채에 대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고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13.5%나 늘어 개인파산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 4) 채무초과상태 조건(conditions du surendettement)과 관련해서는 소비법 제 330-1, 333-2에서 333-3-1조; 채무초과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 331-1에서 331-6조까지, 집행판사가 관할하는 절차에 관련해서는 제332-1조에서 332-4조까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취해질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제331-7에서 331-11조, 333-1, 333-4에서 333-8조까지 규정되어있고, 소비법 시행령 제331-1부터 332-37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보완된다. '개인회복절차' 개시조건에 관해서는 소비법 제330-1조 2번째, 3번째 단락과 제331-3조의 처음-마지막 단락에 명시되어 있다.

처할 수 없는 상태로 특정된다⁵⁾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신청이 수리가가능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채무자는 자연인일 것
- 비직업적 채무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
- 채무자가 선의일 것

첫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다음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다.

1) 채무초과상태 (la situation de surendettement)

‘채무초과’는 ‘지불정지(cessation des paiements)’ 개념과 유사하나 그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채무초과’는 언젠가 지불정지 상태에 이를 수 있겠지만 아직 그들의 채무지불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초과는 ‘지불불능(insolvabilité)’ 개념과 혼동될 수 있다. 지불불능은 한 개인의 차변이 대변을 넘어선 경우를 말한다. 이 두 개념은 유사하다.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지불불능하다. 그러나 지불불능상태가 일시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평가되어지는 반면에 채무초과상태는 미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기가 도래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한이 도래할 부채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또한 현재의 수입원뿐만 아니라 예견 가능한 수입원도 평가 대상이 된다.

신청이 수리가가능하려면 채무초과상태는 ‘비직업적(비전문적)인 채무(dettes non-professionnelles)’와 관련되어야 한다. 법은 그 채무초과가 소비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야지 어떤 직업적인 활동의 결과 이루어진 것은 안된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비직업적인 채무가 고려대상이다. 소비자로서 얻은 신용대출(대부)에서 생긴 것뿐만 아니라 임대료 등의 계약상 채무 또는 세금과 같은 계약외의 채무 등 직업적인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부채가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개인소비자들이 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따라서 개인의 재산에는 직업적 채무와 비직업적 채무가 공존할 수 있다. 소비법상의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적인 활동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 상인, 수공업자 그리고 영농인들은 소비법 제333-3조에 따라 동법상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다른 직업활동을 하는 개인에게는, 특히 프리랜서 또는 직장인에게는 소비법상의 파산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데 비직업적인 채무에 대해서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여야 할 것이다. 즉, 비직업적인 채무 외에 직업적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절차



5) 《 la situation de surendettement des personnes physiques est caractérisée par l'impossibilité manifeste pour le débiteur de bonne foi de faire face à l'ensemble de ses dettes non professionnelles exigibles et à échoir... 》

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채무초과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비직업적인 채무만이 고려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번 절차가 개시된 이상은 모든 채무가 채무자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고 부채의 조정 또는 소거를 할 수 있는 소비법 제331-6조와 331-7조에 규정된 조치들의 대상이 된다.⁶⁾

2) 채무자의 선의(bonne foi)

소비법 제330-1조는 채무자가 선의인 경우에만 파산절차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위원회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소비법 제333-2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채무자의 악의(mauvaise foi)로 간주해 실권하도록 한다.

-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횡령 또는 은닉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 위원회, 판사의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새로운 차변을 하거나,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해서 본인의 부채상황을 심각하게 한 경우

실권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을 뿐, 새로운 신청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2. 소비자파산절차 관할

1) 채무초과조정위원회 (commission de surendettement, 이하 '위원회' 라 칭함)

채무의 청산을 요구하는 채무자는 채무초과절차(procedure de surendettement)를 채무초과조정위원회에 제청한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신청이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히 부채상황을 파악한다. 위원회는 변제조정계획안(합의적 개선계획안, plan conventionnel de redressement)을 통해 채무자와 그들의 주채권자들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1989년 법에 의해 창설되고 여러 차례 개정, 재구성되었는데 현재 위원회의 지위는 소비법 제331-1조 그리고 시행령 제331-1조 및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각 도에 최소한 한 개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도지사(préfet, 회장), 도의 회계과장(trésorier-payeur général, 부회장), 세무부서의 장(directeur des services fiscaux), 프랑스은행의 지점장(사무국) 그리고 도지사가 두 명을 임명하는데, 한 명은 프랑스로 신용기관협회의 추천에 의해서, 다른 한명은 소비자및가정협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다.

여기에 2003년 법은 두 명을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문격으로 추가하는데, 사회 및 가정경



6) 최고법원 1992년 3월 31일 민사1부판결

제분야와 법분야에 있어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 자가 그들이다. 위원회는 최소한 6명 중 4명이 출석 또는 대리출석하여야 한다. 채무자 주소지의 위원회가 관할 위원회이다(소비법 시행령 331-7조).

1995년 이래 위원회는 채무초과절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채무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들이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것이다. 서류들의 심리 및 방향지정은 서류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기간 경과에 대한 아무런 제재는 없으나 만일 위원회가 9개월 동안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판사에게 직접 '개인회복절차'를 개시하도록 제소할 권한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모든 필요한 경우 관계자 청문, 채권자 출석 요구, 행정부서, 신용기관 등에 대한 공조요청, 사회보장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사회적 설문 조사 실시 등 넓은 조사권한을 갖는다.

2) 집행판사 - 감독 및 집행력(force exécutoire)

만일 위원회의 변제조정계획이 당사자들 사이에 채택되었다면 집행판사가 관여할 자리는 없다. 그러나 만일 조정이 실패된 경우라면 위원회는 권고를 제안할 것이고 이는 집행판사에게 15일 이내에 전달될 것이다(소비법 시행령 331-21조). 집행판사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위원회의 권고조치를 집행력 있는 결정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일 위원회에 의한 권고조치들이 당사자들에 의해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판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

적이다. 판사는 제안된 조치들을 보완한다거나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판사는 오로지 권고조치의 적법성(합법성- régularité)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부적법성을 발견하면 판사는 서류를 다시 위원회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제안된 조치들에 집행력을 부여한다. 결정은 항소(appel)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법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법원에서의 상고(pourvoi)는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이미 집행력이 부여된 조치들이 '적절성 있는 조치'였는지에 대한 이의를 할 수는 없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 일방은 집행판사에게 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대한 이의를 직접 제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판사의 역할은 매우 넓어지게 된다. 판사는 위원회와 같은 조사권한을 가지고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고(소비법 제332-2조 및 332-3조), 이는 당연히 법적 집행효력을 갖는 법적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이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된다(시행령 332-1-3조 및 332-8-1조).

3. 소비자파산절차 내용

1) 변제조정계획안(합의적 개선계획안, plan-conventionnel de redressement)

채무초과조정위원회는 “채무자와 그의 주채권자들이 동의할 변제조정계획안을 구상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들을 조정하기 위한 임무”가 있다(소비법 제331-6조). 위원회는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재판부가 아니지만 채무자의 상황을 개

선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조정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적합한 계획안을 작성한다.

변제조정계획안은

- 채무변제의 기한 연기(report), 변제일정의 조정(rééchelonnement)
- 부채의 면제(remise des dettes)
- 이자율의 할인(réduction) 또는 삭제(suppression)
- 일시차입금의 장기공채화(consolidation)
- 담보의 설정 또는 대체(création ou substitution de garantie)의 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1998년 법은 채무초과상태에 처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에서 예정하는 상환액에서 채무자 생활에 필요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그의 수입원의 일부를 뺄 수 있도록 하였다(소비법 제331-2조).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반면 계획은 채무의 변제를 보장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고 지불불능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채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계획의 총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고 서명한 채무자와 채권자들만을 구속한다. 만일 계획이 채무자나 채권자에 의해 동의되지 않았다면 조정노력은 실패한 것이고, 이후 위원회의 권고절차 단계로 넘어간다.

2) 위원회의 권고(recommandations de la commission)

위원회의 조정임무가 실패하고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일정한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소비법 제331-7조).

그것은 더 이상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 계획과 관련하지 않고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자기 고유 권한으로서 채무자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제안한다. 또한 권고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강제력(force obligatoire)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이후 집행관사에 의해 집행력이 부여된다.

위원회의 권고조치는 2003년법 이래 세금 및 사회보장채권(dettes fiscales et sociales)을 포함한 모든 부채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현재는 부양채무(dettes alimentaires)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réparations allouées aux victimes dans le cadre d'une condamnation pénale) 그리고 형사 유죄판결로 부과된 벌금(amendes)만이 조치대상에서 제외될 뿐이다(소비법 제331-1조).⁷⁾

소비법 제331-7조는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최대 10년이 넘지 않고 또는 현존 차용금의 상환기간의 반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채무



7) 벌금을 제외하고 앞의 두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포함 가능하다.

변제일정 재조정(rééchelonnement)

- 채무변제의 원금에의 우선충당(민법 제 1254조 이자우선충당원칙의 예외)
- 채무자의 상황이 그것을 요구하고 ‘특별하고 정당한 이유(proposition spéciale et motivée)’ 있는 경우, 변제기일이 연장되거나 재조정된 채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정이율 이하로 이자율 할인(réduction)
- 주거의 강제경매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 부채의 할인(réduction de la dette)

위원회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동일한 플랜으로 권고조치할 것이 강제되지 않고 각각의 채권자 상황과 채무자의 상황에 맞도록 한다. 따라서 권고조치에 있어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고수되지는 않는다.

3) ‘지불불능(insolvabilité)’의 경우의 위원회의 권고- ‘채권의 소거(effacement des créances) = 부채일부소거’⁸⁾

소비법 제331-7-1조는, 조정임무의 실패 이후 채무초과절차 중 위원회가 채무자의 ‘지불불능상태’를 확인한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불불능상태라 함은 “소비법 제331-7조에서 예정된 조치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는 압류가능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회복불능상태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경제적상황으로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부채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법 제331-7조의 일반적인 권고조치들을 적용해서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개 ‘차변적’ 채무초과(surendettement passif)에서 비롯되는데, 크레디의 능력보다는 경제적 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즉 부채의 초과분보다 수입의 부족분이 큰 경우를 말한다. 1989년과 1995년 법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것이 1998년 개정법이 위원회에 여러 예외적인 조치들의 권고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게 된 이유이고, 이는 위원회에 ‘부채소거(effacement des dettes)’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의회는 위원회가 단번에 이러한 ‘부채소거’와 같은 무거운 조치를 내리도록 허용하지는 않았다. 즉 부채소거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취할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부채소거’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불불능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치를 실행하여야만 한다(소비법 331-7-1조).



8) 프랑스는 현재 채무초과절차와 관련한 부분에서 ‘채권의 소거(effacement des créances)’라는 표현(소비법에서 명시하고 있음)과 ‘부채의 소거(effacement des dettes)’라는 표현을 정확한 논리적 일관성 없이 사용함으로써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지만, 채권의 소거는 부채일부소거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프랑스 학자들도 같은 글에서마저 두 개념을 통일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고 있으며, 본 글은 그대로 따랐음을 밝힌다.

- 위원회는 부양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만기 도래의 정지(suspension de l'exigibilité)를 권고할 수 있는데, 이 지불유예(moratoire)는 최대 2년을 넘지 않는 정해진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지불유예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을 재검토하고, 만일 채무자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지불유예기간의 만료시로부터 두 달 내에 소비법 제331-7조에 규정된 일반적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권고한다.⁹⁾
- 만일 채무자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경우라면 위원회는 유일하게 '채권의 일부소거(effacement partiel des créances)만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특별하고 정당한 이유있는 제안'으로 하여야 한다.

소비법 제331-1-7조를 적용한 권고조치들은 앞서 살핀 절차대로 집행판사에 의해 집행력을 얻는다. 그러나 다른 점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판사는 적법성뿐만이 아니라 '채권일부소거' 조치가 잘 이루어진 것인지도 판단한다는 점이다.

일정 채권들은 제3자, 보증인(caution) 또는 공동채무자(coobligé)에 의해 보증될 수 있다.

법은 만일 보증인 또는 공동채무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한 소거를 금지시키고 있다(소비법 제331-7-1조). 따라서 소거는 반대해석상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직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채무초과상황의 채무자를 위하여 판사에 의해 내려진 조치들을 보증인 스스로를 위해서는 원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일반론을 '채권의 소거'에까지 넓혀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¹⁰⁾

4) 개인회복절차 (procédure judiciaire de rétablissement personnel)

2003년 법에 의해 '부채전부소거(effacement total des dettes)'에 이를 수 있는 '개인회복(회생)절차'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소비법 제332-5조에서 제332-12조에 규정).

(1) 개인회복절차의 개시- 채무자의 '회복불능상태'

이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선의의 자연인인 채무자이어야 함은 앞서 살펴본 다른 절차와 공통된다(소비법 제330-1조 첫번째 단락). 그러나 개인회복



9)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지불유예조치를 권고할 수는 없다.

10) 이에 대해 의회가 '채무'의 소거가 아닌 '채권'의 소거라는 표현을 쓰면서, 채권자가 주채무자나 그 보증인 또는 공동채무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주장이 있다.

절차는 그 이외에 채무자가 '회복불능상태'에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동법 330-1조 세 번째 단락).

'부채전부소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개인회복절차'의 개시조건인 회복불능상태라 함은 '소비법 제330-1조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처리 조치로서 채무자의 곤경상태를 해결하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에 이른 상황'으로, 여기서 말하는 처리조치는 일반적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정된 조치들뿐 아니라 지불불능상태에서 적용가능한 부채일부소거, 지불유예와 같은 특별조치들도 포함한다.

이것은 채무자가 아주 경미한 부채도 갚을 수 없는 어떠한 상황능력도 없는 상태를 가르킨다. 따라서 아주 조금이라도 상환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회복절차'의 개시를 배제시킨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최고법원은 상환능력의 존재 자체만으로 '회복불능상태'를 배척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부채전부소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¹¹⁾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아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의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회복절차는 사실상 '절대적인 법률절차'로서 재판부인 집행판사가 맡는다. 채무자는 집

행판사에 직접 이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채무초과신청을 하고, 앞서 설명한 절차들을 거쳐 위원회가 채무자의 상태가 '회복불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비로소 판사에게 개인회복절차를 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소비법 제331-3조 9번째 단락). 그러나 개인회복절차는 변제조정계획 또는 권고조치의 실행(소비법 제331-7-2조) 중 이라도 집행판사에 대해 직접 이의제기를 한 경우(소비법 제332-5조)에도 개시될 수 있다.

한번 제청되었다면 집행판사는 한 달 내에 개인회복절차의 심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절차를 개시하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부양채권을 제외하고(소비법 제332-6조) 채무의 집행절차를 정지시키고 허가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시킨다(소비법 제332-7조).

(2) 개인회복절차의 진행

절차개시는 채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공표된다. 채권자들은 두 달 내에 그들의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비법 제332-7조 및 시행령 제332-16조). 이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채권은 소멸된다.

대리인이 임명된 때에 그는 채무자의 경제적,



11) '개인회복절차'가 소비법 제332-9조 2번째 단락에 따라, '자산이 채권자들에게 빚을 다 갚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채무자 생활에 필요한 동산, 상품가치를 잃은 자산, 또는 판매비용이 그 법적가치보다 높은 자산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처럼 자산(aktif)의 부족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여야 한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채권들을 확인하여 차변 및 대변적 요소들을 평가한다. 대리인은 임명된 후 4월 내에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판사는 채무자의 개인재산의 '법적청산(liquidation judiciaire)' 을 선고한다(소비법 제332-8조).

청산에는 직업적 재산(biens professionnels)의 처분 및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동산과 직업적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비직업적 재산의 처분을 제외한다. 판사는 청산인을 지정하고, 그는 청산기간 동안 개인재산에 대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청산인은 12개월 내에 채무자의 동산을 처분 또는 필요한 경우 강제경매하고(소비법 제332-8조) 이러한 자산의 처분액을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répartition du produit des actifs)한다.

(3) 개인회복절차의 종료- 자동적 '부채전부소거 (effacement des dettes)'

만일 채무자의 자산(aktif)이 채권자들에게 빚을 청산하는 데 충분하다면, 판사는 곧바로 절차의 종료를 선고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이지 실제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실제로는 처분할 재산이 전혀 없거나 또는 판매가능한 동산이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그 가치가 부족하거나 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판사는 이 경우 '자산의 부족' 을 이유로 절차의 종료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는 자동적으로 '비직업적 모든 부채의 소거(effacement de toutes les dettes non professionnelles)' 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소비법 332-9조).

① '부채소거' 의 개념¹²⁾

'채무초과에 관한 법' 이 고안해 낸 '부채소거' 라는 개념은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는 채무들을 없앴으로써 특히 수입이 없어서 발생하는 '차변적 채무초과' 상황¹³⁾을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채소거는 우선 게으른 채권자에 대한 제재로써 시간의 경과로 인한 '채무의 소멸(extinction des dettes)' ¹⁴⁾ 개념과는 구별하여야 하고, 채무초과법이 '채무의 소멸' 이라는 용어사용을 회피한 데에는 입법자의 어떤 신중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채무초과법에서 처음 사용된 '소거(effacement)' 라는 개념의 법적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프랑스어 사전에 따르면 우선 '소거' 는 '사라지게 함' 또는 '삭제' 의 의미이다.

'부채소거' 는 채권자에게 어떤 만족도 주지



12) Françoise Macorig-Venier, «L' effacement des dettes dans le droit du surendettement », Droit & Patrimoine, n° 184, 2009 참조.

13)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대변적 채무초과 개념과 구별.

14) 민법 제1234조는 채무의 소멸사유들을 열거하고 있고, '소멸' 이라 함은 '채무의 변제 혹은 다른 소멸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해방을 가져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적관계의 종결' 이라고 정의된다(Capitan voca).

않고 소멸하게 하는 특별한 사유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 곤경에 있는 채무자를 이롭게 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로서 권한 있는 자의 결정 또는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어떤 사유들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것은 채권자의 자발적인 소멸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들은 변제조정계획에서 '채무의 면제(remise des dettes)'를 동의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강요되지 않은 면제, 즉 순수히 자발적인 면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소거가능한 채무에 대한 제한(소거제외채권)

채무의 성질상 부채할인 또는 채무변제일정의 조정이나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절차에 공통규정 중 하나인 소비법 제331조 1항은 부양채무,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형사 유죄판결로 부과된 벌금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소거(efacement)'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앞의 두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소거가 가능하다.

2003년 법개정 이전에는 세금, 행정특별징수금, 사회보장채권(dettes fiscales, parafiscals, ou envers l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도 제외채권으로서 특별취급을 하였으나 현재는 다른 채권들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15) 최고법원 2007년 10월 28일 민사 2부 판결, n° 07-00.013; 최고법원 2008년 7월 3일 민사 2부판결, n° 07-15.223.

16) 최고법원 2008년 10월 23일 민사 2부 판결, n° 07-17.649.

17) 최고법원 2009년 3월 19일 민사 2부 판결, n° 07-20.315.

최고법원은 소비법 제331조 1항의 의미를 엄격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부양채권의 성질을 민법상 부양채권의 개념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한다. 부양채권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채권이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학교 급식,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소 또는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이용하는 채권에 관해서¹⁵⁾ 대학병원의 입원비용과 관련하여¹⁶⁾ 그리고 요양소의 숙박 및 치료비용과 관련하여¹⁷⁾ 부양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3자, 즉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 법은 만일 채무자를 대신해 그들이 이미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부채는 소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비법 제331-7-1조). 그러나 만일 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절차가 종결될 때 그들이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들도 소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는 채무초과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 행해지는 조치들을 자신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를 당연히 개인회복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보증인은 절차 종결 후에도 부채를 변제해야 할 위험에 있다. 그러면 변제 후 그가 주채무자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해 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

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I.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에는 부채 일부소거 또는 부채전부소거와 같은 ‘부채의 소거’ 제도라는 것이 있다.

부채소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불불능상태’ 또는 ‘회복불능상태’와 같이 채무자에게 특정 농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여야 한다. 지불불능상태에 따른 ‘부채일부소거’는 채무초과 절차상의 변제조정계획이 실패한 후 위원회의 일반적인 권고조치가 행해지고 또한 2년 이내의 지불유예기간을 거쳐서도 채무자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조정위원회의 ‘특별하고 정당한 이유 있는 제안’으로 ‘부채일부소거’가 권고조치로써 행해진다. 회복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경우 ‘자산의 부족’으로 ‘개인회복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부채소거’는 소비법 제332-9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채 전부에 대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제331-7-1조에서 말하는 ‘지불불능상태’나 또는 개인회복절차상의 ‘회복불능상태’보다 덜 심각한 때에는, 그 어떠한 ‘부채소거’도 이루어질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서 부채소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비법 제331조 1항에 따라 부양채권,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형사 유죄판결로 부과된 벌금은 소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오 영 주

(프랑스주재 외국법제조사원)